

명륜진사갈비 vs 명륜등심해장국 - 문자결합표장의 일부 구성 분리 인식여부: 특허법원

2021. 11. 30. 선고 2020허7357 판결



1. 사안의 개요 및 쟁점

(1) 선등록서비스표 - 명륜진사갈비 vs 후등록서비스표 - 명륜등심해장국

(2)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의 주장 요지 -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'명륜'은

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'명륜'만으로 분

리 인식되지 않음.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출처의 오인·혼동 우려가

없음

2. 특허법원 판결요지

- (1)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인 '명륜진사갈비'를 '명륜'으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.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로서 인식되고 사용되므로 전체관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.

- (2) 확인대상표장은 '명륜', '진사', '갈비'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표장이고, 6음절의 한 글문자가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.

- (3) 확인대상표장의 글자인 '명륜진사갈비'로 피고의 가맹사업을 홍보했으며, 수요자들도 피고의 사업을 '명륜진사갈비' 전체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. '명륜진사갈비'로 피고의 사업을 홍보하였고, 그 과정에서 특별히 '명륜'을 강조하거나 '명륜'으로 축약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, 확인대상표장 등 피고가 사용한 표장들 중 '진사'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.

(4)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'명륜진사갈비'로 검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'명륜' 또는 '명륜갈비'로 약칭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

(5) 확인대상표장 중 '갈비'는 사용서비스업인 돼지고기 전문 식당업 등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.

(6) 확인대상표장에서 '명륜' 부분과 '진사'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, 해당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주지·저명하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, '명륜'과 '진사' 사이에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.

첨부: 특허법원 2021. 11. 30. 선고 2020허7357 판결

지재권분쟁, 침해대응/감정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대응, A~Z 수행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